

EU의 기업결합 규제

- 절차적 특징을 중심으로 -

서혜숙 · 박상화 | 법무법인 KCL 변호사

I. 머리말

현재 EU의 기업결합 규제는 2004년 1월 20일 발효된 “the EC Merger Regulation”(이하 “ECMR”로 약칭함)¹⁾을 그 중심축으로 하고 있고,²⁾ 이러한 ECMR의 구체적 집행을 위하여 EC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정한 시행규칙³⁾(이하 “The Implementing Regulation”으로 약칭함)은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ECMR의 해석 및 적용을 위한 다수의 고시들(Commission Notices)⁴⁾이 EU의 기업결합 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EC위원회는 관련 당사자에게 기업결합 규제 절차에 있어서의 진행 단계별 준수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Best Practice Guidelines on the conduct of EC Merger Regulation proceedings”(이하 “Best Practice Guidelines”라고 약칭함)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EU의 기업결합 규제의 여러 특징 중 하나는 기업결합 관련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절차의 준수가 경쟁제한성과 같은 실질적 요건에 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Schneider Electric SA v. Commission 사건에서, CFI(Court of First Instance)는 위원회의 실질적 분석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판결

1) “Council Regulation (EC) No139/2004 of 20 January 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 between undertakings”.

2) 협행 ECMR은 전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개정 전 ECMR No4064/89 중 상당한 내용이 수정된 것이다.

3)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02/2004 of 7 April 2004 implement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 between undertakings”.

4) 기업결합 관련 위원회 고시로는, Notice on the concept of concentration, Notice on the concept of the undertakings concerned, Notice on the calculation of turn over, Notice on remedies, Notice on the appraisal of horizontal mergers, Notice on simplified procedure for the treatment of certain concentration 등이 있다.

을 내리는 대신 위원회가 당사자의 방어권(the rights of defence)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CFI는 위원회가 SO(the Statement of Objection)에서는 단지 수평적 기업결합에 근거하여 설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재벌그룹(conglomerate)에 대한 규제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당사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위원회가 SO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었으면서도 위원회의 결정의 근거를 SO에서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당사자들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한 항변권을 제한하고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하 이 글에서는 EU의 기업결합 규제의 절차를 개정된 ECMR을 중심으로 개관하면서 특히 이러한 절차들 속에서 당사자의 방어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행사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EU 기업결합 규제의 주요 법원(法源)

ECMR의 상위 법원은 EU Treaty⁵⁾ Title IV, Chapter 1(Rules on Competition)의 Section 1(Rules Applying to Undertakings) 이하의 조항들인데, 이들 중 특히 Article 81은 공동시장(common market)에서의 경쟁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목적 내지 결과를 가져오는 사업자간의 합의, 사업자단체의 결정 또는 공동행위 또는 협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s), 즉 카르텔을 금지하는 내용이고, Article 82는 회원국간의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공동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며 Article 83은 Article 81과 82의 시행을 위한 규칙과 지침의 제정권을 EU 각료이사회(the Council)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사실 EU Treaty에는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각료 이사회로 하여금 별도의 기업결합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도록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의 규제를 위하여 기존의 법적 수단을 최대한 적용하여 왔다.⁶⁾

Europemballage Corp and Continental Can Co Inc. v. Commission 사건에서 ECJ(European Court of Justice)는 Article 82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인수를 통하여 그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5)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6) Alison Jones & Brenda Sufrin, EC Competition Law(Oxford University Press, 2nd ed. 2004), at 856-858.

판시한 이후, Article 82는 기업결합 규제의 실질적 근거규정으로 이해되었으나, 이 규정은 인수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상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규정만으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문제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기업결합 규제를 위한 Article 81의 적용과 관련하여 EC위원회는 초기에는 기업결합의 규제를 위하여 Article 81을 적용하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가 이후 그 태도를 바꾸었으며, BAT and Reynold v. Commission 사건에서 ECJ는 Article 81 역시 다른 기업의 소수지분(minority shareholding)을 인수하는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사업자간의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는 Article 81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단독의 사업자가 기업결합 대상 기업의 지분을 전부 취득하는 경우에 복수 사업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위 Article 81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해결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ECMR이 필요하게 되었고, Article 81과 82가 적용될 수 없는 기업결합의 규제를 위해 Article 83이 위원회에 부여한 규칙 제정권의 행사에 따라⁷⁾ ECMR이 제정, 발효된 것이다. 한편, ECMR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Article 81과 82는 여전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회원국의 법원 또는 경쟁당국에 의하여 기업결합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⁸⁾

III. EU 기업결합 규제에 있어 주요 절차 및 그 특징

1. One-Stop Shop

ECMR은 위원회 규모(Community Dimension)의 모든 기업결합(Concentration)⁹⁾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ECMR Article 1에서 규정하고 있는 Community Dimension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독점적 관할권(sole jurisdiction)을 가지고 회원국의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하며,¹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각 회원국의 법률이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One-Stop Shop의 예외로는 Article 4(4)(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회원국이 경쟁당국에의 사건의 이첩), Article 9.(Distinct Market)

7) EU Treaty에서도 ECMR이 Article 83 및 Article 308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8) 전계서, pp 896-897.

9) ECMR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에 관하여는 ECMR Article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상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10) ECMR Article 21.

및 Article 21(4)(Legitimate expectation)에서 정한 경우와 회원국의 안전보장(National Security)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U treaty Article 81과 82("residual application")가 적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기업결합 신고(Notification)와 기업결합 이행의 유예(Suspension of concentration)

현행 ECMR은 개정전 ECMR에 비하여 기업결합 신고 시기에 관한 상당한 개정이 있었다. 즉, 기존의 ECMR (No4064/89)에 의하면, 위원회 규모의 기업결합은 그러한 합의의 결정(the conclusion of agreement), 공개입찰의 공고(the announcement of the public bid), 또는 지배지분의 취득(the acquisition of controlling interests)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¹¹⁾ Article 7에 의하면 이러한 기업결합은 그 신고일 이전 또는 그 신고일로부터 3주가 경과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금지되었다.¹²⁾

한편, 현행 ECMR Article 4(1)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원문대로 옮기자면, "Concentration with a Community dimension defined in this Regul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Commission prior to their implementation and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the announcement of the public bid, or the acquisition of a controlling interests".

따라서, 이러한 개정 ECMR에 의하면 기업결합 당사자는 합의의 결정, 공개입찰의 공고, 또는 지배지분의 취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상의 제한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이행일 이전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기업결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는 합의의 결정, 공개입찰의 공고, 또는 지배지분의 취득의 계획이 충분히 구체화 된 경우, 예컨대 MOU가 체결되었거나 letter of intent가 sign 되었거나 공개입찰 의사가 공개적으로 공표된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관한 신고를 할 수도 있다.¹³⁾

한편, Article 7(1)에 의하면, 해당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신고전 또는 위원회가 당해 기업결합이 공동시장과 합치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행(implement)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Article 7(2)에서는 공개입찰(public bid)과 증권거래

11) ECMR (No4064/89) Article 4(1).

1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 a concentration as defined in Article 1 shall not be put into effect either before its notification or within the first three weeks following its notification".

13) ECMR recital 34.

소 등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거래로서 복수의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¹⁴⁾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에 관하여 위원회는 Article14(2)(a)에 의거 당해 사업자의 총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fine)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가 삼성이 미국 법인인 AST Research Inc.의 지배지분을 취득하게 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며 삼성이 위반 사항을 인식하고 위원회에 충분히 협조하였으나, 삼성의 신고일이 법정 기한을 상당히 도과한 것이어서 다른 기업들에 대한 경고적 차원에서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¹⁵⁾ 외국 법인간의 기업결합 역시 Community Dimension에 해당되는 한 ECMR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국내 기업들도 그 기업결합에 있어 항상 EU 기업결합 규제에 관한 주의와 검토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고전 사전협의절차(Pre-notification discussion with the Commission)

기업결합 신고 방법과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할 정보와 자료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The Implementing Regulation과 Form CO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규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기업결합 신고 당시 요구되는 자료와 정보의 양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의 투입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가 유효하게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¹⁶⁾ 따라서, 이러한 시간과 노력은 때때로 당사자간에 계획된 합병 등의 기업결합 거래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기업결합 신고전 위원회와의 사전협의절차(Pre-notification discussion with the Commission)는 전체적인 기업

14)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 신고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당사회사 중 일방이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해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규모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기업결합시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신고 규정이 당사자에게 보다 유연하고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만약 사후신고 이후 해당 기업결합에 있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규제와 같이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결합에 관하여는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되 임의적 사전신고 절차를 통하여 기업결합의 이행 전에 위원회의 의사를 태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사적 거래의 자유와 경쟁법적 규제간의 합리적이고도 절충적인 방안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당사자에게 임의적 사전신고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의 책임을 지도록 함과 아울러 사후신고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계약위반 책임 등 불측의 책임을 발생케 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15) Case IV/M.920, [1999] OJ L225/12, [1998] 4 CMLR494.

16) 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완전한 신고가 접수되기까지는 개시되지 아니한다.

결합 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¹⁷⁾

한편, 위원회의 “Best Practice Guidelines”는 이러한 신고전 사전협의절차와 Form CO의 작성 방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지침은 DG Competition (Competition Directorate General of the European Commission)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동 지침에 의하면 사전협의절차의 주목적은 기업결합 심사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할 정보에 관한 협의뿐만 아니라 관할을 비롯한 법률상 쟁점(경쟁제한의 우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기업결합 당사자 이외에 경쟁사업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법률전문가와 해당 산업계의 대표자들이 이러한 절차에 참여하여 위원회의 case team과 실질적 토론을 거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¹⁸⁾ 사전협의 절차는 최소 신고 2주전에 개시되도록 권장되며, 통상 매주 개최되는 DG Competition Merger Management Meeting에서 case team이 구성된다.¹⁹⁾

4. 신고전 제출(Pre-Notification Reasoned Submission)

위에서 설명한 신고전 협의절차와는 별개로 현행 ECMR에서 새롭게 도입한 것이 바로 신고전 제출(Pre-Notification Reasoned Submission) 제도이다. 이는 EU Commission과 각 회원국간의 관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사자들이 ECMR에 기재된 수량적 기준만으로는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Community dimension의 요건에 따라 EC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국 경쟁당국이 관할권을 갖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항상 분명하고 용이한 것은 아니라는 고려에 따라, EC위원회와 회원국 경쟁당국 간의 해당 사건의 이관 내지 이첩(transfer)에 관한 유연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Pre-Notification Reasoned Submission을 통하여 기업결합의 관련 당사자는 기업결합에 관한 EC위원회 또는 회원국 경쟁당국에의 신고 이전에 관할의 결정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²⁰⁾

17) Best Practice Guidelines 5항.

18) 위 지침 제9항.

19) 위 지침 제11항 참조.

20) 당해 submission은 the Implementing Regulation에 첨부된 Form RS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함.

5. 기업결합 심사(Investigation)²¹⁾

(1) 1단계 심사(Phase 1 Investigation)

위원회는 신고서를 수령한 즉시 심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절차 개시와 결정 기한은 ECMR Article 10에서 규정하고 있다.

1단계 결정은 통상 기업결합 신고(complete notification)을 전제로 한다)의 수령일로부터 25 업무일(working days)의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간은 Article 9(Referral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에 따라 이첩 요청이 있거나 당사자가 해당 기업결합이 공동시장과 양립할 수 있도록 당해 기업결합을 수정하기로 서약하는 사건의 경우 35 업무일간 연장될 수 있다.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해 기업결합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보(Official Journal)에 의하여 공시되어야 한다.²²⁾ 이러한 25일과 35일의 기한까지 위원회는 ECMR Article 6에 의거 아래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의 결정을 채택하게 된다.

- Article 6(1)(a): 신고된 거래가 ECMR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Community dimension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취지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 Article 6(1)(2): 위원회는 신고된 거래가 그 자체 공동시장과 양립 가능한 것이라고 선언하거나, 또는 기업결합 당사자가 제출한 시정 서약(commitments)의 조건하에 당해 기업결합이 공동시장과 양립될 수 있다고 선언할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당해 결정은 기업결합의 이행 행위에 직접 관련되거나 필요한 제한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된다.
- Article 6(1)(c): 만약 해당 기업결합이 공동시장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갖는 경우, 위원회는 그와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2단계 심사(Phase 2 Investigation)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통계적으로는 기업결합 신고 사건 중 90~9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건이 1단계 절차로 종료되고 2단계 심사로 넘어가는 부분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 Article 10(6): 만약 위원회가 위 소정의 기한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은 공동시장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1) 이하 전개서 pp904~906 참조.

22) ECMR Article 4(3).

(2) 2단계 심사(Phase 2 Investigation)

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rticle 6(1)(c)에 의거 2단계 심사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90 업무일 기간의 심사 기간을 가지게 되며, 당해 기간은 기업결합 당사자로부터 54 업무일 이후의 시점에 시정 서약(commitment)이 제출된 경우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위원회가 요청하여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기간은 총합 20 업무일간 연장되는 것도 가능하다. 때때로 위원회는 당사자들이 규정된 기한 내에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해 심사기간의 진행을 일시 정지하는 것도 가능하다.²³⁾ 만약, 이러한 기한 내에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앞서 1단계의 경우에서 본 것과 같이 해당 기업결합은 공동시장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2단계 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Article 8에 의거하여 내리는 결정은 다음과 같다.

- Article 8(1): 해당 기업결합이 공동시장과 양립 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결정
- Article 8(2): 당해 기업결합이 일정한 수정(modification) 조건하에서 공동시장과 양립 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결정. 위원회는 이 경우 기업결합 당사자들이 공동시장과 양립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결합을 수정하기로 한 서약을 준수하는 것을 확실히 강제 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과 의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²⁴⁾ 만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의 동 결정은 철회될 수 있다.²⁵⁾
- Article 8(3): 당해 기업결합이 공동시장과 양립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결정. 이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로 하여금 해당 기업결합을 해소(dissolve)하도록 하거나 당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시정되는데 필요한 다른 조치(restorative measures)를 명할 수 있다.²⁶⁾

(3) 사실 발견과 정보 수집

이상에서 본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고객, 공급업자, 경쟁업체 등의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²⁷⁾ 또한 DG Competition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 경제 분야에서 정보 및 데이터의 수집에 필요한 방법론에 관하여 신고 당사자 및 관련 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 경제 또는 산업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²⁸⁾

23) Case COMP/M.282 Schneider/Legrand 10 Oct. 2001.

24) ECMR Article 8(5).

25) ECMR Article 8(6).

26) ECMR Article 8(4).

27) ECMR Article 11, Article 13, Best Practice Guidelines 26항.

28) Best Practice Guidelines 27항.

6. 기업결합 당사자 또는 관련 당사자 및 제3자와의 협의와 회의 (Communication and meetings with the notifying parties, other involved parties and the 3rd parties)

EU 기업결합 규제에 있어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 또는 시정조치(remedies)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기업결합 당사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의 참여권이 두텁게 보장된다는 점과 Best Practice Guidelines 등 체계적인 규정의 마련과 그 준수를 통해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Best Practice Guidelines에 규정된 관련 당사자의 참여 절차를 특히 State of Play meeting과 Remedies discussion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기업결합 당사자들과의 State of Play Meeting

State of Play Meeting의 목적은 Best Practice Guidelines 30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아울러 기업 결합 당사자와 DG Competition간의 협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회의는 통상 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되나 전화 또는 비디오 회의로 대체가 가능하며 안건은 사전에 통지되어 준비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당사자는 동 회의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시정 내용을 DG Competition에 개진할 수 있고 관할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기도 한다. 당사자와의 State of Play Meeting은 다음의 각 단계별에 따라 개최된다.

- ECMR Article 6(1)(c)에 따라 공동시장과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 되는 경우에는 1단계 심사개시 후 3주가 경과하기 전에 동 회의가 개최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위원회의 잠정적 결정을 통보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시정방안을 준비할 기회를 부여 받게 된다.²⁹⁾
- 당사자와의 State of Play Meeting은 ECMR Article 6(1)(c)에 따른 결정이 내려 진 후 2주 이내에 다시 개최되며, 당해 회의를 위하여 당사자는 당해 결정 또는 위원회의 관련 보고서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DG Competition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위원회의 관련 보고서에 대한 당사자의 검토 기회가 사전에 부여 되어야 한다. 이 회의는 2단계 심사 절차로 넘어 가기 전에 당사자에게 위원회 결정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관련시장 확정과 경쟁제한 분석 등의 실질적 연구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29) Best Practice Guidelines 33항(a).

- 기업결합 불허 결정(Statement of Objection, 이하 “SO”라고 약칭함)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도 당사자와의 State of Play Meeting이 개최되는데, 이 때 당사자는 2단계 심사에 관한 DG Competition의 잠정적 결론과 SO에 제시될 불허 결정의 사유를 전달 받게 된다.
- SO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제출(reply)과 청문 절차(Oral Hearing) 이후에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과 청문 절차를 통해 개진된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DG Competition의 견해가 전달되며, 가능한 시정조치들의 범위와 시기에 관한 의견이 교환되기도 한다.
-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회의 개최 전에 당사자는 State of Play Meeting을 통하여 당사자들에 의하여 제안된 시정방안의 적절성과 그에 대한 시장 분석 등에 대한 DG Competition의 견해를 전달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는 자신들이 제안한 시정방안의 형식을 수정할 기회를 부여 받게 된다.

(2) 제3자의 참여(Involvelement of third parties)

EU의 기업결합 규제 절차에 있어 소비자, 공급업자, 경쟁사업자, 해당 기업의 관리 또는 경영 조직, 또는 노동자 대표는 당해 기업결합에 있어 상당한 이해관계(“sufficient interest”)를 갖는 제3자로 이해된다.³⁰⁾ 이러한 제3자들은 위원회의 ECMR Article 11에 근거한 자료 요청 과정에서 그 회신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DG Competition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제3자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절차의 진행중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표명한 제3자에 대하여는 기업결합 당사자의 기밀이 삭제되어 편집된 SO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부여되기도 한다.

(3) 3면회의(Triangular Meetings)

DG Competition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결합 당사자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함께 동석하여 3자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사실 확인이나 각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³¹⁾

(4) 시정방안의 협의 (Remedies Discussion)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단계 심사 및 2단계 심사절차중에 개최되는 State of Play

30) Best Practice Guidelines 34항.

31) Best Practice Guidelines 38항.

Meeting에서는 사실 확인과 심사 자체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기업결합 당사자가 제안한 자진시정방안(Possible remedy proposals)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 이러한 시정방안의 제안에 관하여는 “Commission Notice on remedies acceptable under Council Regulation (EEC) 4064/89 and under Commission Regulation (EC) No 447/98”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러한 시정방안의 제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DG Competition은 당사자가 그러한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에 그 적절성에 대한 일반적 조언을 제공한다.

IV. 맷음말

이상에서는 EU의 기업결합 규제 제도를 개정된 EMCR 및 관련 절차를 중심으로 일부 특징적인 내용에 관하여 개관하여 보았다. EU 기업결합 규제와 우리의 법제를 살펴보자면, EU 와 회원국과의 관할 배분에 따라 발생하는 특유의 제도를 제외하고는 그 기본 맥락에 있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의 경우 Best Practice Guidelines 등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권과 협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정조치와 관련하여서도 당사자들에게 심사 진행의 각 단계별로 위원회의 견해와 판단 근거를 제공하여 당사자들이 적절한 자진시정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제도를 보완 개선하여야 할 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

한편,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시정방안의 구체적 협의 과정과 EU 기업결합 규제에 있어 시정조치의 유형에 관하여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보다 심도 깊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시정조치**